

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27.

발의자 : 박덕흠 · 김성원 · 정태옥
윤종필 · 정진석 · 경대수
박성중 · 김명연 · 박맹우
박명재 · 윤영일 · 황영철
김용태 · 이은권 · 원유철
주승용 · 여상규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8년 현행법이 제정 · 시행된 이후 해안권 및 내륙권에 여러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, 지자체별 산발적 사업추진,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제 · 문화 ·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여 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정부는 2017년 ‘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’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, 이러한 발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,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하려는

것임(법률 제8823호 동·서·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 · 서 ·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8823호 동 · 서 ·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“2020년”
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8823호 동 · 서 ·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20년</u>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법률 제8823호 동 · 서 ·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30년</u>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